자료집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일시 | 2024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아디, 참여연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말 이학영 국회 부의장 4

인사말 한정애 의원 5

인사말 이재정 의원 7

인사말 이용선 의원 8

인사말 김준형 의원 9

발제1.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11

발제2.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1

토론1.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40

토론2.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44

토론3. 강지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48

프로그램

10:00 좌장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10:05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10:20 발제1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중단 조치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10:35 발제2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정보 공개 및 국회 통제 강화 방향으로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10:55 토론1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1:02 토론2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11:10 토론3 **강지윤** (미국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11:17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11:55 폐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이학영입니다.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열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이용선, 한정애 의원님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님,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자지구의 상황은 이제 지역 분쟁을 넘어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4만 3천 명이 넘는 사망자와 10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대다수가 여성과 아이들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지난 3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사망자가 최소 31명에 달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중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재검토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까지 10년간 700억 원이 넘는 무기류를 이스라엘로 수출했으며, 가자 사태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에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무기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데 사용된다면, 이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 세계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각국의 중단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동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모여 가자지구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부의장으로서,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국제사회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 이학영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주신 여러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토론회 준비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이학영, 이용선, 이재정, 김준형 의원님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자지구에서만 4만 1천 명 이상이 살해당했고 이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며,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 1세 미만 아이들도 710명에 달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공습 중단’명령과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 과정에서 유엔 평화유지군까지 공격해 국제사회에서는‘국제법 위반’이자‘전쟁범죄’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편, 1990년 이후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한국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약 710억 원 상당의 무기류를 이스라엘에 수출했고, 가자 학살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이후에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류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한국 정부는 즉시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무기 수출은 「무기 거래 조약」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만 전쟁 등 민감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기 수출의 경우에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전문가분들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만큼 전 세계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각국의 중단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다뤄진 의제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포함해 한국 정부가 유엔 무기 거래 조약 가입국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 한정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그리고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을 명분으로 무차별적 가자지구 폭격과 집단학살 자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밥을 먹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가자지구의 병원, 학교, 농경지 등은 초토화되고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민간 희생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이 즉각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촉구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습 중단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며 서안지구, 시리아, 레바논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는 세계 모든 국가와 인류의 공동 책임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로의 무기, 탄약 및 구성품 이전을 즉각 중단하여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 세계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각국의 중단 조치 현황을 살펴보며,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평화의 가치를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 이재정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 모두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4만 1천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그중에는 710명의 1세 미만 아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닌 집단학살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자지구에 쓰일 수 있는 살상용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돕고 가자지구의 학살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에서 방산이 20대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선정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국제 평화와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에서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에는 각각 무기 수출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살상용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입국에 공격목적의 사용을 못 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무기수출허가권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방산 수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국익을 우선하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가자지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 이용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입니다.

가지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좌장을 맡아주신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님과 발표와 토론으로 지혜를 나눠주실 이영아 팀장님, 임재성 변호사님, 정민정 입법조사관님, 이동화 사무국장님, 강지윤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는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제사회의 무능을 질타하며 분쟁 해결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극단적 대립은 레바논과 이란으로 확산하여,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기지를 공격하며 철수를 요구했고, 국제법은 무시당했으며 UN과 국제기구는 무력화되었습니다. 2006년에 유엔이 설정한 이스라엘-레바논 완충 구역 역시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국제법과 인류의 양심이 무시되는 지금,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행동이 절실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사 물자 수출 금액은 약 2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헌법에 명시된 국제 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분쟁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는 것은 전쟁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지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 수출이 폭력의 연료, 분쟁의 기폭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력은 더 큰 무력을 낳고, 폭력은 폭력으로 종식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화를 향한 작은 불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여 평화라는 큰 빛으로 퍼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회의원 김준형

발제1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중단 조치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 군사 점령하고 식민 지배해 온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을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폭격은 지속되고 있으며, 거주지, 병원, 학교, 난민 캠프, 수도 및 위생 시설, 농경지 등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 전쟁 중에도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 언론인, 의료인, 인도적 구호 활동가들이 표적 살해당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 4만 3천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사람들도 1만 명 이상이다.

가자지구 폭격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새로운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고, 서안지구 주민들에 대한 공격과 이스라엘에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 성폭력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이 모든 행위는 집단학살이며, 전쟁범죄이다. 지난 2024년 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1]. 그러나 명령 후에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자지구 폭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와 시리아, 이란, 레바논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든 행위는 제노사이드 협약, 국제 인도법, 국제사법재판소(ICJ) 명령 및 의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기구의 수많은 권고 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책임자들이 국제형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무시하며 1년 넘게 집단학살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의 지속적인 무기와 탄약, 기타 군수 물자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5만 톤 이상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지원했고[2]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1] ICJ,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 2024.01.26.
[2] Democracy Now, <U.S. Has Sent Over 50,000 Tons of Arms and Military Equipment to Israel Since Genocide Started>, 2024.08.27.

이탈리아, 호주, 한국 그리고 이외 다른 국가들 역시 폭탄, 총알, 제트기, 연료 지원으로 이스라엘을 무장시켜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위반으로 해당 정부 관계자들 역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엘빗 시스템즈, 록히드 마틴, RTX(옛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 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의 방산 업체들은 폭탄과 총알, 제트기를 생산하며 전례 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요 15개 무기 생산 기업은 2026년에 최소 52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말의 총 현금 흐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3].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하마스 공격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다.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전례없이 높은 사망자 수와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우려와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유엔 총회는 2023년 12월 12일, 「민간인 보호와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 Protection of civilians and upholding legal and humanitarian obligations」 결의안을 채택[4]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자지구 상황에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집단학살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 명령을 내렸다. ICJ의 임시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자국 군대가 집단 학살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2024년 5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라파 지역에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추가 명령했다[5].

한편, 유엔 독립조사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10월 7일 이후 여러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6]했다.

---

[3] Financial Times, <Top defence contractors set to rake in record cash after orders soar>, 2024.08.26
[4] UN Resolution A/ES-10/L.27 <Protection of civilians and upholding legal and humanitarian obligations>, 2023.12.10.
[5] ICJ,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 2024.05.24.
[6] United Nations, <Gaza: Hamas, Israel committed war crimes, claims independent rights probe>, 2024.06.12.

유엔의 무기 수출 관련 조치와 명령

2024년 4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28개국의 찬성, 6개국 반대, 13개국 기권[7]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수입 무기를 들여오는 미국과 독일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독일은 해당 결의안이 하마스를 비난하고 있지 않기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 20일 유엔 전문가 그룹은 이스라엘로의 무기 및 탄약 이전은 국제인권 및 국제인도법을 위반으로 집단학살 등 전쟁범죄 공모가 될 우려가 있다며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8]. 성명에는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즈, 보잉, 캐터필러,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오쉬코쉬, 라인메탈 AG, 롤스로이스 파워 시스템, RTX(옛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스), 티센크루프 등도 기존 수출 허가하에 이뤄지는 이전이라 하더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중개국을 통한 간접 이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9].

2024년 9월 18일 유엔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12개월 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것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10].

그러나 제니퍼 에릭슨 미 보스턴대학 교수는 "결과적으로 유엔이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 중단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회원국들에 금수 조치를 강제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독일이 동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엔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시행했던 것처럼 안보리 투표로 무기 금수 조치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11].

---

[7]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독일, 말라위, 파라과이, 미국이 반대표를 던지고, 알바니아, 베닌, 카메룬,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조지아, 인도, 일본,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네델란드, 루마니아가 기권했다.
[8] UN OHCHR, <States and companies must end arms transfers to Israel immediately or risk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UN experts>, 2024.06.20.
[9] 유엔 전문가 그룹은 방산업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역시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Alfried Krupp von Bohlen und Halbach-Stiftung, Amundi Asset Management, Bank of America, BlackRock, Capital Group, Causeway Capital Management, Citigroup,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INVESCO Ltd, JP Morgan Chase, Harris Associates, Morgan Stanley,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ewport Group, Raven'swing Asset Management,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State Street Corporation, Union Investment Privatfonds, The Vanguard Group, Wellington and Wells Fargo & Company 포함된다.
[10] UN General Assembly, A/ES-10/L.31/Rev.1 <Advisory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he legal consequences arising from Israel's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from the illegality of Israel's continued presenc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2024.09.13.
[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72년 2월 4일 제311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확대에 주목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규탄했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이 정당함을 인정했다.이에 안보리는 아파르트헤이트로 수감된 모든 사람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모든 국가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무기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 주요 무기 수출국 현황과 조치[12]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무기 수입을 크게 늘려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9~2013년 세계 47위 무기 수입국이었던 이스라엘은 2019~2023년에는 세계 15위 무기 수입국이 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2.1%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미국은 이스라엘이 군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한 국가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2023년 기준 이스라엘이 수입한 무기의 69%는 미국산이다. 미국은 항공기, 장갑차, 미사일, 선박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산 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 중인 모든 전투기는 미국에서 이스라엘용으로 특수 개조하여 공급받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주변 중동국보다 군사력 우위를 유지한다는 "질적인 군사 우위(QME, qualitative military edge)"를 법으로 명문화[13]하고 1999년부터 10년 단위로 막대한 규모의 군사원조를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10년 동안 연간 38억 달러(약 5조 1,100억 원)씩 총 380억 달러 군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양측이 맺은 양해 각서에 따라 무기 구입에 330억 달러,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스라엘은 이 지원금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 75대를 구입하고, 2023년 기준 36대를 인도받았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제외하고 F-35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이자,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F-35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이란 영토인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 6기로 폭격할 때도 F-35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중 연간 5억 달러 정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 돔(Iron Dome), 데이비드 슬링(David's Sling), 애로우(Arrow) 시스템에 사용된다.

미국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신속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섰다. 항모전단 2개를 지중해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GPS 항법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추적·파괴하는 소구경 폭탄 1천 발을 지원했다. 10월 10일에는 미국산 고성능 탄약이 실린 비행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10월 14일에는 A-10 공격기가 증강 배치됐다. F-16, F-15, F-35 등 주력 전투기들도 배치되었으며, 10월 19일에는 미국산 장갑차량들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미국은 2023년 연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남은155mm 포탄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도 했다. 2024년 6월 기준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한 무기에는 MK-84 2000파운드 폭탄 1만 4천 발, 500파운드 폭탄 6,500발, 헬파이어 정밀 유도 공대지 미사일 3천 발, 벙커버스터 폭탄 1천 발, 공중 투하 소구경 폭탄 2천 6백 발이 포함되어 있다.

---

[1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How top arms exporters have responded to the war in Gaza, 2024.10.3 / WILPF, The World Must Stop Arming Israel, 2024.10.14. 참고
[13] PUBLIC LAW 110-429 OCT. 15, 2008

미국은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해외 군사 조직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금지하는 '리히법(Leahy law)[14]'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따라 이스라엘이 제재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 9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무기수출통제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차단을 위한 결의안」[15]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이스라엘에 대해 총 200억 달러(약 27조 원)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16]했으며, 여기에는 가자지구 민간인 수만 명을 살해한 무기 체계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8월 미국은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로 저지르는 민간인 탄압을 감시하기 위해 '민간인 피해 사건 대응 지침(CHIRG)' 제도를 마련했다. 미국산 무기를 받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외교적 조치 혹은 무기 수출 중단 등의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 제도를 근거로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사용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살상 사례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500건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확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며,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17].

독일

독일은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보내고 있다. 이스라엘 수입 무기의 30%(2019~2023)를 차지하며 주로 이스라엘 해군을 위한 무기이다. 이전 무기의 81%는 호위함, 나머지 10%는 어뢰였으며, 8.5%는 가자지구 공습에 사용된 장갑차 엔진이었다. 독일이 수출한 호위함 MEKO A-100도 가자지구 공습에 사용되었다.

독일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크게 늘렸다. 2023년 11월 기준, 독일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3억 5,400만 달러(약 4,900억 원)를 기록했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수출한 무기의 대부분이 방공 시스템 및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지만, 대전차 무기와 기관총, 탄액 등 2천 2백 만 달러(약 303억 원) 상당의 공격용 무기도 포함됐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으며,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가 이성(reason of state)'"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이성'이란 말은 지난 2008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기념 연설을 하며 처음 언급한

[14] US Department of State, <About the Leahy Law>
[15] FACT SHEET: Joint Resolutions of Disapproval under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nd Proposed Arms Sales to Israel
[16] 판매 승인 된 무기는 ▷합동직격탄(JDAM)(2억 6200만 달러, 인도 임박) ▷120mm 전차탄(7억 7410만 달러, 2027년부터 인도) ▷120mm 고폭 박격포탄(6110만 달러, 2026년부터 인도) ▷중형 전술 차량(583. 1억 달러, 2026년 인도 시작) ▷신형 F-15IA 다목적 전투기(최대 50대)와 F-15 업그레이드 및 추가 장비(188.2억 달러, 2029년 인도 시작)이다.
[17] Aljazeera, <US fails to act on 500 cases where its weapons harmed Gaza civilians>, 2024.10.31.

것으로, 과거 유대인 홀로코스트 가해국인 독일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024년 3월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해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독일의 군사 지원이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18].

2024년 6월 가자지구 주민들은 독일 정부의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허가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가자지구에서의 적대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무기 수출 허가를 중단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베를린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베를린 법원은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요청을 기각했다[19].

독일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인명피해가 폭증하자 2024년 3월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를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일산 무기를 이용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출하자 2024년 8월 말부터 수출 허가를 재개했다. 독일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8월 이후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스라엘에 9,400만 유로(1억 1,100만 달러)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0]. 이에 유럽 헌법 및 인권센터(ECCHR)은 가자 주민인 원고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아내와 딸을 잃었다며, 10월 24일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에 추가 무기 수출 중단을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21].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탱크에 부품을 공급하는 독일 방산업체 렌크 그룹 AG(Renk Group AG) R3NK.DE의 부품이 분쟁에 사용될 수 있다며 수출 승인 중단을 요구했다.

영국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은 1970년 이후 이스라엘에 주요 무기를 수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을 포함하여 항공기, 레이더 및 표적 장비와 같은 다양한 시스템 부품을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다. 2023년 영국은 이스라엘에 최소 1,700만 파운드(약 2200만 달러, 약 305억 원) 상당의 수출 허가를 승인했으며, 특정 물품을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는 제외했다.

영국의 무기 거래 반대캠페인 CAAT(Campaign Against Arms Trade)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영국은 이스라엘에 총 5억 7,400만 파운드(약 1조 278억 원)에 달하는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이 중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미국산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CAAT은 해당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

[18] 국제사법재판소는 4월 30일 이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19] i24news, <Berlin court rejects request to halt German arms exports to Israel>, 2024.06.12.
[20] The Time of Israel, <Germany approves over $100 million in arms exports to Israel, angering rights groups>, 2024.10.24.
[21] ECCHR, <We continue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German arms exports to Israel>, 2024.10.24.

2024년 6월에 발표된 수출 허가에 대한 공식 데이터[22]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수령국으로 포함된 총 345건의 기존 허가가 있다. 이 중 108건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승인된 것으로, '헬기 및 고정익 항공기용 부품, 훈련용 소형 무기 탄약, 잠수함 부품, 방탄복용 부품' 등이 포함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85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검토 중이며, 최근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3년 12월, 글로벌 법률 행동 네트워크(GLAN, Global Legal Action Network)와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하크(Al-Haq)는 이스라엘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런던 고등법원에 제기했다[23]. 2024년 6월에 심리 날짜가 2024년 10월로 연기되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자국민 구호 활동가 3명이 살해당했던 2024년 4월, 영국 전직 대법관 4명을 비롯한 법률가 750여 명이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영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24].

한편, 2024년 9월 2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무기의 일부 품목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확한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일부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이스라엘 무기 수출 허가는 약 350건으로 수출 금지 결정이 난 것은 F-16 전투기 및 무인 항공기 부품, 해군 시스템, 표적 장비 등 30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금지 품목에는 F-35 전투기의 영국산 부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훈련기와 해군 장비, 화학물질 및 통신 장비 등도 제외됐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이스라엘의 제3대 무기 수출국으로 2019~2023년 기준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의 0.9%를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은 경헬기(59%)이며, 나머지는 독일이 공급하는 호위함에 장착하는 함포(41%)이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는 F-35 프로그램 파트너로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이탈리아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1,370만 유로(약 205억 원)에 달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쟁 중이거나 인권 침해 국가를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2023년 10~12월 약 210만 유로에 달하는 수출이 승인됐다. 2024년 3월 의회에서 기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이탈리아는 기존 계약을 사례별로 점검하고 민간인에게 사용되지 않는 확인이 이루진 후 이전에 승인된 주문만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25].

---

[22] GOV.UK, <Export control licensing data : 31 May 2024>, 2024.6.11.
[23] Al-Haq, <Legal and human rights groups take UK government to High Court over arms exports to Israel>, 2023.12.6.
[24] 뉴스1, <英 법조계 750여 명, 이스라엘에 무기판매 중단 촉구 공동서한>, 2024.04.05.
[25] Reuters,<Italy arms exports to Israel continued despite block, minister says>, 2024.03.15.

프랑스

2023년 7월 프랑스 국방부가 발표한 무기 수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3년~2022년 이스라엘에 2억 760만 유로(약 2,900억 원) 상당의 군사 장비(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등)를 수출해 왔으며, 2023년에는 3천 만 유로(약 440억 원) 상당의 군 장비를 수출했다.

2024년 2월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의 대이스라엘 수출은 '기본 부품'이라며, 2023년 10월부터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할 때 국제적 약속을 엄격히 준수한다"며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 장비는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은 프랑스 정부에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2024년 4월 11일 프랑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이스라엘에 내린 무기 수출 승인과 관련해 파리 행정법원에 임시 조치 신청 3건을 제기했고, 세 건은 모두 기각되었다.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인 디스클로스는 지난 6월 프랑스가 가자지구 공습에 사용된 헤르메스 900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했다고 폭로했다[26].

지난 10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스라엘에 무기금수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난 6월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에 이스라엘 업체들의 참가를 금지했고, 11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해양 방위산업 박람회에 이스라엘 업체 부스나 장비 전시를 금지했다.

스페인

스페인 정부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의 기항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페인 탐사 저널리스트들은 정부 포털에서 입수한 수치를 인용해 10월 7일 이전에 승인된 수출 허가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 스페인에서 이스라엘로 98만 7천 유로(약 15억 원) 상당의 탄약이 수출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캐나다는 2022년 기준 이스라엘에 2,130만 캐나다 달러(약 212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0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존의 무기 판매 허가 30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캐나다제 무기와 부속품들은 그것이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이든 간에, 가자지구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월 8일

[26] Disclose, <France equips Israeli armed drones as the war rages in Gaza>, 2024.6.17.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신규 판매 허가를 중단했지만 그 이전에 승인된 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독립 미디어 기관인 더 브릿치(the Breach)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엔진 센서를 수출하고 있는 유일한 공급 업체인 가스톱스(Gastops)의 수출은 중단하지 않았다. 10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이 F-35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스톱스는 유일한 단독 공급업체이다[27].

한국

1990년 이후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무기 거래도 확대하였다. 2023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는 700억 원 이상이며, 2023년 10월 7일 이후에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다. 한국이 이스라엘의 무장을 도와 가자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과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내역을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했으며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의 무기류 수출입 통계도 비공개 처리했다. 정부는 유엔 무역 통계(UN Comtrade)에도 무기 수출 통계를 비공개 요청했다.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무기 수입과 군사협력도 지속해 왔는데, 2014년~2022년까지 이스라엘로부터 약 1억 2,800만 달러(약 1,690억 원)의 무기를 수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 2021년 이스라엘 최대 무기 회사인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차세대 무인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8]하고, 한화시스템즈는 이스라엘 무기 회사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 엘빗 시스템즈와 '상호 기술 협력 및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29]했다. 한화 시스템즈는 2024년 10월에도 항공우주산업과 엘빗시스템즈와 함께 'UH/HH-60 성능개사업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30]하였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지속해왔다.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당시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BDS (보이콧·투자철회·제재, Boycott·Divestment·Sanction) 요청에 응답하여 한국 정부에 무기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31]했으며, 참여연대는 외교부에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 종류와 규모,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고려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32]하였다. 당시 무기 수출 중단 권고 의무가 있는 외교부는 주관부처가 아니라며 답변을 방사청으로 미뤘고, 방사청은 "한국산 무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사용되었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며, "수출 허가 시 국제 평화와 안전 및

[27] The Breach, <Ottawa-based company is key to keeping Israeli warplanes bombing Gaza>, 2024.9.12.
[28] 아시아경제, <KAI, 이스라엘 ELBIT와 차세대 무인항공기 협력 MOU>, 2021.03.14.
[29] 한화, 보도자료<한화시스템, 글로벌 방산 기업과 함께 수출 경쟁력 강화 나선다>, 2021.10.21.
[30] 글로벌 경제신문, <한화시스템, KAI·이스라엘 엘빗과 손잡고 첨단 항공전자 시장 공략 박차>, 2024.10.05.
[31] 한국 40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군사원조를 당장 중단하라>, 2014.08.08.
[32] 참여연대, 보도자료<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정부 입장 2차 공개 질의>, 2014.08.05.

국가안보, 국내외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무책임하게 답했다[33].

2024년 1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은 방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방사청에 전달하였다[34]. 그러나 이후 방사청으로부터 그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오히려 무기 수출 통계를 돌연 비공개하고, 국회에조차 그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상황 관련 한국 정부의 무기거래조약 이행>에 대해서도 방사청은 대부분 "대외무역법 제27조(비밀준수의무)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무기거래조약 이행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무기거래조약(ATT)을 준수하고 있으며, UN, ATT,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사회 입장 및 결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35].

마치며

국제 사회는 오랫동안 각국 정부에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Stop Arming Isrel)'를 요구해 왔다. 규모가 크든 작든, 이스라엘의 무장에 기여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팔레스타인 학살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휴전 촉구', 'UNIFIL 공격 규탄', '인도적 지원 촉구' 등의 말로는 충분치 않다. '살상무기' 수출이 아니라 괜찮다는 핑계도 그만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국가들 역시 부품 수출을 중단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중단과 불법 점령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다.

---

[33] 참여연대, 보도자료<참여연대 2차 공개질의에 대한 외교부의 실망스러운 답변>, 2014.08.28.
[34] 참여연대,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Stop Arming Israel, 2024.01.19.
[3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검토 시 사용하는 프로세스나 가이드라인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국제수출통제체제 중 하나로 무기거래조약(ATT)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무기거래조약 제6조 제1항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조치에 따른 의무, 특히 무기금수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이전도 허가도 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경우 방위사업청은 무기금수조치에 따라 수출 승인을 제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발제2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정보공개 및 국회통제 강화 방향으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I. 서언: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평화운동의 핵심적 목표 중 하나는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다. 안보(국방) 영역은 기밀성과 폐쇄성을 앞세워 '민주주의 예외 영역'으로 존재(군림)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영역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기에 시민사회는 안보와 국방을 민주주의로 끌어당기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 사회가 부담해야 할 적절한 국방비는 얼마인지',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군사훈련이 과도하여 이웃 국가들을 자극하거나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와 같은 질문을 공론장에 던지고, 관련 정책과 결정을 감시하고 검증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평화운동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 정도에 비해 안보 영역에서의 민주화는 더디기만 하다. 국방예산과 복지예산 사이의 기회비용을 두고 벌어지는 소위 '대포 대 버터' 논쟁(guns or butter)'[36]이 다른 사회에서는 보편적 화두인 반면, 한국 사회 안에서는 철저히 비주류 담론에 머무는 모습이 '안보영역의 더딘 민주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다.

무기 수출입에 대한 통제 역시 마찬가지다. 본 토론회 제1발제인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중단 조치"(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발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작년 10월 7일 이후 벌어진 가자 학살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① 국회의원이나 전직 최고 법관들이 포함된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요구(또는 국회 결의안 발의), ② 언론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한 탐사보도, ③ 무기 수출 허가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36] '대포 대 버터' 논쟁을 잘 다룬 신문 칼럼 일부를 인용한다. "우리에겐 무척 낯설지만, '대포 버터'(guns or butter) 논쟁이 있다. 대포(군사비)와 버터(복지)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이 둘 사이의 적정 분기점이 어디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과 미국의 경제학자, 사회복지학자, 정치학자 등이 이 논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 논쟁에 관심이 없다. 남북 분단 상황이라 너무 당연히 버터보다 대포를 중시해왔기 때문이다 … 정부나 군이 적정 국방력 논의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므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으려면 공론화해야 한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국회의 국방예산 심의가 한국판 '대포 버터' 논쟁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한국판 '대포 버터' 논쟁 신호탄을 기다린다", 「한겨레신문」, 2020. 11. 5.)

경우, 올해 1월, 시민 1만여 명이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서명[37]에 참여했고 이후 관련 집회에서 꾸준히 구호로서 외쳐졌지만, 국회나 언론 등 제도적 영역에서 이스라엘 무기 수출과 관련 논의나 활동은 사실상 전무하다.[38] 심지어 올해, 기존 공개되던 무기 수출입 정보가 모두 비공개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매우 드물었다.

본 발제문은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과 최근 상황을 바탕으로, '안보 영역, 특히 무기 수출입에 대해 민주적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① 무기 수출입 정보(통계)가 공개되어야 하고, ② 무기 수출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나 제도 변화 동력이 크지 않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핀 바 있다. 문제의식을 가진 정당이나 국회의원도 드물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는 제1발제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도덕', '기준'이 된 상황이다.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은 학살이 벌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국가들의 '양심선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양심선언에 함께할 방안을 고안하는 것은 '국제평화 유지'라는 헌법적 의무를 실현하는 일이다. 나아가 전쟁 초기부터 최근까지 첨예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같이 달라진 국제질서 속에서 무기 수출·지원은 한 국가의 외교·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결정(정책)이 되었다. 이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II. 무기 수출입 정보 공개 필요성

안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정보'이다. 안보 영역이 예외적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동력은 정보의 독점(불투명성)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관철되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나 해보자. 현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가? 작년 2023년만 해도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항목별로, 월별 무기류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필 바와 같이 올해 기존 공개되던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대중에 공개되던 정보는 막혔지만, 국회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최근 "2014년 1월 ~ 2024년 9월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 목록, 업체명, 액수"를 방위사업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답변은 "해당국에는 부품류가 수출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 제29조(비밀 준수)[39]에 따라 세부 자료는 제출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2024. 11. 현재 국회조차 대한민국의

[37] 위 서명의 구체적 요구사항 다음과 같았다. '한국정부는 ①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군사 협력을 중단하라', ②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③ 즉각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38]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2023. 12. 8.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무기 수출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또한 2024. 10. 10.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국회 결의안"(제안자 이재정 의원 등 41인)이 제출되었으나, 역시 무기 수출 관련 내용은 없다.
[39] 대외무역법 제29조(비밀 준수)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5조제5항제4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해당 무역거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무기수출 현황, 목록, 액수와 같은 단순 통계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이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목록과 업체명은 물론, 액수라는 기본적 정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40].

따라서 무기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쟁점은 정보 공개이다. 본 항에서는 ① 정부의 무기 수출입 정보 공개 현황을 확인하고, ② 무기 수출입 정보와 관련해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소송인 관세청을 상대로 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이하 '무기 수출입 정보공개소송'이라고 함)의 개요 및 위 소송에서 관세청의 주장 요지를 일별한 뒤, ③ 정보 공개의 정당성과 해외사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무기'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하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 '무기'란 'HS 코드 93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지칭한다. 'HS'(Harmonized System)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관리하는,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 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인데, 이 HS 코드 93이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을 가진 대표적인 '무기류' 항목으로 분류된다. 또한 '수출입 정보'란 이 항목에 따른 시기별 수출입 총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 사용하는 '무기 수출입 정보'란 **HS 코드 93의 세부 항목별로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에 시기별로 수출입한 액수의 정보**라고 특정하겠다.

[40]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답변이었는데, 위 방위사업청의 답변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방위산업청은 위 본문과는 또 다른 의원의 최근 질의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방산물자 또는 군용물자품목 수출허가 관련해 제한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더더욱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즉,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잘못된 정보를 말한 것인데, 이를 '거짓말'이 아닌 '무지'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일이다. 지금 이 사안이야말로 국제정치의 최상위급 이슈이기 때문이다. 제1발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 9월 2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일부를 중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발표를 한 사람은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었다. 캐나다는 9월 퀘벡에서 제조된 탄약을 이스라엘에 공급하려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중단했다. 이 발표를 한 사람 역시 캐나다의 외교부 장관 라니 졸리다. 유력 국가들의 수반과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국의 무기 수출에 대해 중단, 제한 등의 발표를 줄줄이 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사실조차 틀린 발언을 한 것이다. 무지가 아니라 수치다. 이 수치스러운 답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회 그 누구도 이 외교부 장관의 거짓말 또는 무지를 지적하고, 그래서 무기 수출이 정당한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HS 코드	HS 코드 설명
9300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2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 (제 9303 호 또는 제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4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 또는 가스총 및 피스톨・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7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1. 정부의 무기 수출입 정보 비공개 조치

1) 관세청

대한민국의 수출입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관청은 관세청이다.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정보를 2016년까지는 공개하였지만, 2017년부터 비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정보공개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이하 '관세청 소송 답변서'라고 함)에서 "2016년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기 한미 FTA 재협상 및 방위비 재협상 등과 관련하여 무기류 수출입 규모 등이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외교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익 침해 우려와 함께 위에서 말씀드린 국방과 관련한 이익을 해칠 우려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라고 비공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관세청의 비공개 사유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은 2016년까지 무기 수출입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하였지만, '한미 FTA 재협상 및 방위비 재협상'과 같은 특수 상황 아래에서 기존에 공개되던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행정청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그렇다면 관세청이 기존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든 한시적 사유가 현재도 유효한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관세청은 HS 코드 93류 정보는 비공개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HS 코드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다. 아래 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HS 코드 8710에 관해 2023년 국가별 수출입 실적인데(가나다순 정렬), 이스라엘에 2023년 약 83만 달러의 전차류 수출액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관세청은 전차류 수출입 정보와 무기류 수출입 정보 사이에 어떠한 기준과 차이로 공개 여부가 나뉘는지도 설명해야 하지만, 소송 답변서 등에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 실적(품목별+국가별)

검색조건 통계항목 : 품목별+국가별, 품목명 : 8710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국가명 : 전체, 하위품목 유무 : 무, 조회기간 : 2023 ~ 2023, 통계기준 : 수리일, 중량단위 : 톤

단위:톤(TON), 천 달러

기간	국가	HS코드	품목명	수출 중량	수출 금액	수입 중량	수입 금액	무역수지
총계				2,148.7	116,536	906.3	113,609	2,927
2023	그리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44.0	390	0.0	0	390
2023	네덜란드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0.0	0	4.3	277	-277
2023	노르웨이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0.3	294	0.0	2	293
2023	대만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0.0	0	0.0	0	0
2023	덴마크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19.5	234	0.0	0	234
2023	독일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326.9	3,323	382.4	64,619	-61,295
2023	라트비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26.0	6,725	0.0	0	6,725
2023	루마니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1.0	483	0.0	0	483
2023	말레이시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0.1	26	0.0	0	26
2023	멕시코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0.0	0	0.0	1	-1
2023	미국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85.6	2,314	120.9	22,156	-19,843
2023	바레인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141.7	1,340	0.0	0	1,340
2023	사우디아라비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209.4	14,597	125.2	8,832	5,765
2023	스페인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118.6	1,301	0.0	0	1,301
2023	싱가포르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132.5	7,014	2.2	140	6,873
2023	아일랜드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0.0	0	70.6	832	-832
2023	에스토니아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62.7	6,274	0.0	0	6,274
2023	영국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6.8	304	24.2	2,817	-2,513
2023	이라크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170.8	8,826	0.0	0	8,826
2023	이스라엘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	31.7	832	20.6	1,806	-974

2) 무역협회

대한민국의 수출입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통로는 무역협회였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에서는 ‘HS 코드 93’(무기·총포탄)과 앞서 확인한 ‘HS 코드 8710’(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의 정보가 더해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SITC 코드 891’(무기 및 실탄) 정보가 공개되고 있었다[41]. 또한 다른 분류체계이지만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MTI 코드 97(무기류) 정보도 제공되고 있었다.

그런데 무역협회는 MTI 코드 97(무기류)의 경우는 2024년 2월경, SITC 코드 891(무기 및 실탄)은 같은 해 5월 말경 각 비공개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소송 답변서에서 이 비공개가 모두 관세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고, 아래와 같은 요청 공문까지 증거로 제출하였다.

[41] 한국무역협회의 경우 SITC분류체계에 의한 무역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SITC분류체계 역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이며, 앞서 언급한 HS 코드와 함께 상품분류제도의 대표적 코드 중 하나이다.

<관세청의 2024년 5월 28일 자 한국무역협회에 대한 요청서>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관세청

관 세 청

수신 (사)한국무역협회
(경유)
제목 무역통계 홈페이지 특정 품목·국가 수출입실적 비공개처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1612('24.4.17)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무역통계 홈페이지(K-stat) 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이 해당 수출입 실적이 공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청 사유
- 기존 비공개 운영 중인 HS 93류의 품목별/국가별 실적이 SITC 기준으로 공개 조회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조치 필요

○ 추가 요청 내역
- 무기 및 실탄 SITC(891) 중 품목분류코드인 HS93류를 포함된 모든 국가별 수출입 실적 비공개 추가 조치
  • 기존 품목분류코드 HS93류를 포함한 무기류 MTI(9701, 9702, 5243) 비공개 처리

즉, 무역협회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오던 무기 수출입 정보도 2024년 6월 이후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황이다.

3) 유엔 무역통계(UN Comtrade, 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42]

유엔 무역통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무기 수출입 정보는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왔고, 대한민국의 통계도 그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2024년 7월경 유엔 무역통계 측에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입 정보 비공개를 요청했고, 유엔 무역통계는 같은 해 8월경,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개되던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입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정보공개소송에 관련 요청 공문을 역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42] https://unstats.un.org/unsd/trade/default.asp

<관세청의 2024년 7월경 유엔 무역통계에 대한 요청서>

Request to change 6 unit import/export statistics including HS 93 class

보낸사람 **"관세청 무역통계" <kcstsc@korea.kr>** 주소추가
받는사람 Comtrade <comtrade@un.org> 주소추가
보낸날짜 2024년 07월 19일 15시 57분 33초

Please delete the entire period for the 6 unit import and export statistics including HS 93, Please reply when the deletion is completed.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무역통계 담당자 +
042-481-7846, 7878 +
++

Additional Request Regarding Trade Statistics from Korea Customs

보낸사람 **"관세청 무역통계" <kcstsc@korea.kr>** 주소추가
받는사람 Comtrade <comtrade@un.org> 주소추가
보낸날짜 2024년 07월 24일 15시 36분 17초

Dear colleague,

I am KY Kim, in charge of trade statistics at the Korea Customs Service starting this week.

In addition to the emails exchanged with my predecessor, I have an additional request.

Currently, the Korea Customs Service does not disclose import and export statistics for HS Chapter 93 to the public by relevant laws. Therefore, we kindly ask you to ensure that all HS Chapter 93 data (including 2-digit, 4-digit, and 6-digit levels) are kept confidential and not disclosed in the export and import statistics of Korea provided on https://comtrade.un.org.

At present, trade values and related data for Chapter 93 can still be viewed on your site.

Please let me know once this has been addressed, so I can verify that the data has been successfully removed from your sit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Best regards,
KY Kim
KCS

결론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입 정보는 관세청을 통해 제공되던 정보는 2017년부터, 무역협회 및 유엔 무역통계를 통해 제공되던 정보는 2024년 비공개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무기 수출입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방법은 모두 사라졌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2. 무기 수출입 정보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개요 및 관세청 답변 요지

1) 소송개요

평화운동 단체들은 앞서 확인한 정보 비공개의 흐름 속에서 소송을 통해 정보를 공개 받고, 이후 제도 변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평화운동 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여지우 활동가(무기 감시 캠페인 코디네이터)는 2024년 2월 21일 관세청에 '2023년 대한민국의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은 같은 해 3월 6일 "국방 등 국익 침해"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여지우는 위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관세청은 같은 달 26일 "안보 기관의 교역규모는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고, 국가별 통계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여지우는 2024년 5월 22일 관세청을 피고로 하여, 위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64). 이후 관세청은 같은 해 10월 17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첫 번째 변론기일은 같은 해 11월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

이 소송은 무기 수출입 정보의 공개 여부를 두고 제기된 한국 내 최초의 소송이고, 발제자는 위 소송의 원고(여지우) 측 소송대리인이다.

2) 관세청 답변 요지

무기 수출입 정보공개소송의 피고석에 앉게 된 관세청은 정보의 비공개 이유를 답변서를 통해 설명했다. 이 답변서 기재 내용은, 관세청이 공식적이면서 상세하게 수출입 정보 비공개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정보(2023년 무기 수출입 정보)는 적의 침략 시 침략군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국토와 국민을 방위할 수 있는 포병 무기·미사일 등 무기류에 관하여 10단위 품목 번호에 따른 수출입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토방위와 관련한 구체적·현실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사건 정보에 담겨 있는 수출입내역을 통해 우리나라 전략무기·특화무기·취약분야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입업체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임을 감안할 때 그 수출입 규모 또한 우리 국방력 파악과 직결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방력의 현황 및 변동 사항이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방과 관련한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

- 특히 무기류는 그 특성상 수출입업체가 한정되어 있으며, 10단위 품목 분류체계에 따른 일부 품목 번호의 경우 수출업체가 1개 업체뿐인 경우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통계를 통해 물품 단가, 해외거래처 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당해 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발생시켜 장기적으로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방위물자와 관련하여 방위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음.

- 정부의 비공개 방침은 일관된 것이었음. 최근까지 무역협회 및 유엔 무역통계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은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비공개로 조치하여 완료된 상황임.

- 무기 수출입 정보가 공개되는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의 차이 특히 분단국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참고가 될 수 없음.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관세청 답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무기 수출입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사례를 확인하겠다.

3. 무기 수출입 정보 공개의 정당성 및 해외 사례

1) 정보 공개의 정당성[43]

군사기밀에 대한 적정한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이 기밀이고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무기 수출입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정보를 보자. 대한민국이 2023년 1년 동안 수출입한 무기류의 국가별·항목별 총액을 담은 수준의 정보이다. 이 정도 분류 수준의 총액 정보가 과연 대한민국 정도 수준 국가의 국방에 어떠한 실질적인 해악을 야기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 이미 국내외에서 쉽게 확인되고 공개되는 정보였고, 그 공개로 인해 야기된 실질적 해악은 없었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함께 반드시 병존하여야 할 가치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투명성 확보이다. 국방 관련 정책 결정과 관련 절차가 모두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외부의 견제 없이 독주하게 될 때, 우리 사회가 이미 오랜 시간 경험한 바와 같이 무기 수출입 과정에서의 비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별도 기관으로 설립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방위사업법」 제2조에서 "방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명성** ·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방위사업의 목표로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44].

---

[43] 위 항의 내용 중 일부는 발제자의 칼럼 "'무기통계' 감추기 급급한 윤 정부", 「한겨레신문」 2024. 9. 4.의 일부를 인용했다.

[44] 국방대학교가 발간한 「방위력 개선분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2006)에서는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유익할 수 있음", "필요 이상의 군사기밀 보호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무기 수출입 정보 비공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교리처럼 외치면서도 정작 그 '힘'에 대한 상식적 수준의 정보조차 감추겠다는, 최소한의 감시나 견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조치이다. 윤 정부가 무기 수출산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타당한지, 윤리적인지에 대한 논쟁은 논외로 하자. 최우선 정책이라면, 그에 걸맞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층위의 검증과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는커녕 공개되어 왔던 자료조차 감추고 있다.

앞서 확인한 일련의 조치로, 한국 사회는 무기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국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가자 학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지, 지난해에 견줘 올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지 못한다.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독재 국가들에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출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무기 통계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빼앗아놓고는 정작 정부의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 정책을 선전하면서는 '비공개'라 감춘 정보들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 달러', '방산 수출 대상국이 12개국으로 늘었다', '폴란드에 이어 동남아, 남미서도, 올 200억 불 방산 수출 꿈 아니다' 등이다.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라는 것이다.

관세청 등이 무기 수출입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국방 영역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무기 수출입 정보가 국방 관련 정보인지 의문이다. 해당 정보가 국방 영역의 비공개 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방 영역과 포괄적·추상적 관련성을 가진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에 ①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 태세 또는 ② 국토방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먼저 무기 '수출' 정보는 국방과 관련된 정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외국에 수출한 무기류 실적에는 대한민국의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비 태세' 또는 '국토방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무기 '수입' 정보 역시 그 정보의 구체성에 비춰봤을 때, 이를 비공개 사유 중 하나인 '국방'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 대한민국이 시기별로 수입한 무기의 국가별·항목별 총액이 정보의 내용인데, 이 정도 추상도를 가진 정보에 국토 방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무기배치나 전력운용 내용 등도 담겨 있지 않다.

무기 수출입 정보를 국방과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추상성은 앞서 살핀 바와 같기에 국방 영역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무기 수출입 정보를 통해 확보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무기류 수출입 관련 정책과 집행의 투명성은 구체적이고 상당한 공익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에서 어느 항목 무기를 어느 정도 수입했는가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공개되어 토론과 검증, 비판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정보이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국방

봉쇄하게 되어 국민의 불신 · 비협조 ·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아울러 국민의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을 희석시키고 정치적 무감각, 소외감, 적대감을 갖게 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66쪽)과 같이 국방 관련 정보의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공익들을 지적한 바도 있다.

영역에서 공익을 증진하는 유력한 방식이다. 무엇보다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수준의 유사한 정보들이 이미 국내 및 다른 국가에서도 일상적이고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 해외사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무기 수출입 정보가 원활하게 공개되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분기별로 신청된 무기 수출 허가에 대해 발급·거부·취소 여부와 대상 국가, 품목, 금액 등의 자료를 '전략 수출통제(Strategic export controls) 온라인 데이터베이스'[45]라는 별도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위 웹사이트에서 2023년 2분기 영국의 수출 정보를 확인해 보면, 무기류 수출 관련 정보도 매우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데,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분류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상세한 확인을 누구나 할 수 있다.

Table 3 - Description of goods for processed SIELs by licence sub-type, outcome and type of goods, United Kingdom, 1 April to 30 June 2023 [note 1] [note 2]

Source: Strategic export controls: licensing statistics: 1 April to 30 June 2023

This worksheet contains one table. Refer to notes which can be found on the Notes worksheet. [x] denotes a data point that is not available, [z] denotes a data point that is not applicable and 0 means nil.

Filters are active in row 5 and may hide some data. To turn off all filters select the 'Data' ribbon then 'Filters' button or use [Ctrl, Shift, L].

Destination Country [note	SIEL Sub-type [note 4]	Licence Outcome	Types of goods on licence [note 5]	Permanent or Temporary	Description of goods	Number of licences	Number of small firearms [note 8]	Some or all issued on appeal [note 9]	Some or all subsequently revoked [note 9]	Footnotes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assault rifles	1	182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components for assault rifles	1	[x]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components for pistols	1	[x]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machine guns	1	7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Afghanistan	Standard	Issued	Military	Permanent	pistols	1	103	No	No	Licence granted fo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plomatic mission end use.

영국은 무기류 포함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과 토론, 비판과 견제도 활발하다. 영국에 본부를 둔 'Campaign Against Arms Trade'(CAAT, 무기거래 반대 캠페인)[46]이라는 국제 NGO의 경우 영국의 무기류 수출 정보를 재가공해 보여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47]

[45] https://www.gov.uk/guidance/strategic-export-controls-licensing-data#quarterly-reports
[46] https://caat.org.uk/
[47] https://caat.org.uk/data/exports-uk/

개별 국가의 사례에 대해 관세청은 소송 답변서에서 '분단의 특수성', '해당 국가(영국)의 예외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 무역통계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무기 수출입 자료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무기 수출 부동의 1위인 미국도 무기 통계를 일관되게 공개한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 무기명이나 수량, 배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연도별, 국가별 총액 수준의 무기류 수출입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다. 많은 나라들이 무기 통계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로 발생한 안보 위협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2019년 이스라엘에 688만 4,013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수출했다.' 이 문장에 담긴 정보에서 어떤 안보 위험이 존재하는가?

4. 소결 : 제도적 제안

본 토론회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이다.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다. 무기 수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통제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무기 수출입 정보는 기존까지 공개가 되었고, 올해 갑자기 비공개된 것이기에 관세청이 다시 공개하면 된다. 즉, 정보 공개를 위해 특별한 제도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엔 무역통계에서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왜 대한민국은 갑자기 비공개 조치를 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근거를 요구하고, 비판하는 방식도 정보 공개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앞서 확인한 무기 수출입 정보공개소송의 결과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예정인데,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다면 사법부 판단도 유력한 논거로 활용될 것이다.

행정부의 자의적 처분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대외무역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외무역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허가 경유 및 환적 허가, 중개 허가 등의 내용이다. 정보공개는 두 층위나 나눠 이뤄지는데 ① 국회에 보다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② 일반적 정보공개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분기별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략물자 등의 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조항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식(관세청이 기존에 공개하던 방식 등)으로 국회 제공 정보보다는 제한되지만, 기존 유엔 무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조항이다. 다만 기존의 공개되는 정보(총액)보다는 신청, 발급, 거부, 취소의 정보를 모두 공개 대상이 되기에 정보의 범위는 기존보다는 늘어난다. 이는 영국의 사례에 따른 것인데 이를 통해 허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통계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대외무역법 신설 조항 예시

제24조의2 (전략물자 수출입 정보의 공개)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의 허가신청, 발급, 거부, 취소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정보 중 국제 상품분류체계에 따른 항목별 총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III. 무기 수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 서언 : 무기 '수출'과 '지원(양도·대여) 사이의 차이점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를 다루기에 앞서, 무기 '수출'과 무기 '지원'(양도·대여) 사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토론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대이스라엘 한국 무기 수출'이다. 그런데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다. 무기 '지원'은 (사실상) 무상의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고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기에 일반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그 행위의 성격과 근거 법령 및 통제의 정도,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48].

현재 정부의 무기 대여·양도에 관해서는 「군수품관리법」이 규정[49]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 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74, 2024. 7. 10. 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 · 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48] 이에 대한 혼돈은 많은 언론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분석기사에도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근거법령을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그 위반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무기 수출보다는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법령은 군수품관리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정부, 교전 중인 우크라에 무기 지원?…'파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2024. 11. 4.)
[49] 「군수품 관리법」은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88, 2024. 8. 28. 발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현행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 대여·양도 권한을 국방부 장관, 즉, 국방관서 및 각군에 부여한 취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 외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나 정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대여·양도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음. 외국에 대여·양도하는 무기 지원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무기 지원 기준에 맞게 **외국에 제공한 대여·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 장관이 국유재산인 무기 대여·양도함에 있어 무기 지원 기준에 맞추어 무기 대여·양도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한정애 의원 안은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고, 김병주 의원 안은 군수품 지원 내역 일체를 국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다. 후자가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자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의 무기 지원에 있어서 국회 동의권을 규정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발제자 의견으로는 한정애 의원 안과 김병주 의원 안이 상충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정보공개 규정과 그중 일부에 대한 국회 동의권 규정을 두는 방식의 입법이 적절해 보이고, 그래야만 실질적인 통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 발제문은 무기 수출에 대한 것이기에 이하에서는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겠다.

2. 현행 무기 수출 통제의 근거 규정

먼저, 현재 제도에도 (충분 여부를 떠나)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의 근거는 존재한다. 「무기거래조약」(대한민국 2013년 서명, 2017년 발효) 제6조 제3항은 아래와 같이 해당 무기가 민간인 공격 등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수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발제에서 살핀 수많은 국제기구의 결정과 보고서 내용 앞에서, 한국 정부가 '부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무기거래조약 제6조 금지사항

3. 당사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품목이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허가 시 인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전도 허가하지 아니한다.

대외무역법 역시 아래와 같이 전쟁 중인 국가, 나아가 국제 평화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5조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 · 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 여건의 급변으로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의 하위 법령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데, 위 고시는 "전략물자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해당 전략물자 등의 거래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거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9조의6 제1항 제1, 2호)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이미 「무기거래조약」의 금지규정 위반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허가 기준에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무기 수출 허가가 취소되거나 수출이 중단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5조가 정한 장관의 재량권(교역상대국이 전쟁 중인 경우 무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불사용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무기 수출 중지를 포함한 조처를 한 바도 있다. 2021년 미얀마에 대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은 2021년 쿠데타와 폭력적 시위 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① 국방·치안 분야의 교류·협력 중단 ② 군용물자의 수출 금지 ③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유관 법령에 의거하여 방산 물자 등의 수출을 국제 평화·안전 유지 등을 근거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50]

물론, 현행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충분한 것과는 다르다. 당장, 앞서 살핀 무기거래조약의 제6조 제3항의 경우 허가에 대한 금지 규정이지만, 이를 국내법에서 불허 사유로 구체화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하는 강두원 변호사가 논문을 통해 무기거래조약 제6조 제3항의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 *"근본적으로 한국법은 재래식 무기 이전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무기거래조약 제6조에 나열된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즉, 무기거래조약 제6조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국에게 관련 무기 이전을 승인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국법상으로는 그러한 의무적 승인 불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무기거래조약 제6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무기거래조약 제6조 제3항과 관련해서는 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31제2항 제1호 나목이 "국제테러지원, 마약공급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위협 대상 여부"를수출허가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군용물자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지침의 붙임#1 재래식 무기의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축적에 관한 분석 요소 중 잠재적 수입국의 동기에 대한 평가 부분에 "무기가 … 무력분쟁법을 억압 또는 침해하거나 이를 조장할 목적으로 사용"될지 여부가 고려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무기거래조약 제6조 제3항에 비해서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 무기거래조약 제6조에 규정된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무기 이전을 불승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51]"*

무엇보다 문제는 위 규정들을 행정부가 지키지 않을 경우 견제 방안은 없다는 점이다. 사법적 방식으로의 통제는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국회를 통한 견제 방안 고안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무기 수출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 통제,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3. 무기 수출에 대한 국회 통제 방안

22대 국회에 발의된 무기 수출에 대한 국회 동의권과 관련한 법안은 김병주 의원 안이 대표적인데, 발제자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2023. 4. 25. 발의), 역시 당시 이슈였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

[50] 뉴시스, <외교부, 무기 행사 미얀마 초청 비판에 '방산수출 엄격 규제'>,2023. 8. 9.
[51] 강두원, "무기거래조약의 발효에 따른 국내적 이행 방안", 국제법학회논총 137호, 2015, 11-34쪽.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85, 2024. 8. 28.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우려하는 국제평화, 국제관계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나, **전투장비 및 탄약, 무기 수출 등을 수출하여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의 사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ro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6항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제5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 파병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⑦ 국회는 제6항에 따른 수출허가의 동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발제자는 위 김병주 의원 안 수준에서 국회 동의권이 「방위사업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신속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먼저 위 법률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주요 방산물자', 즉 수출국이 아니라 '물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주요방산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이스라엘 수출임에도 국회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국' 역시 동의권 대상의 기준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5조 제1호의 경우 "교역상대국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입 금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차용해 "교역상대국에 전쟁·무장 충돌·사변이 있는 경우"를 국회 동의권 행사의 대상으로 추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위 법률안은 「방위사업법」 제34조에서 정한 '주요 방산물자'를 다시 한번 대통령령으로 제한한 후 이를 국회 동의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국회 통제의 범위(대상)의 결정권을 행정부가 가진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국회 동의권 대상이 되는 주요방산물자는 교역상대국과 상관없이 공격성이 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가 될 것인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별표 형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무기의 수출을 국회가 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와 공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회 동의권 이외에도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를 위한 입법안으로 김준형 의원 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64, 2024.9.23 발의)」 및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85, 2024.9.23. 발의)」이 있다.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이상 방위사업법),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이상 대외무역법)가 있는 경우 무기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 법안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 위한 특정한 맥락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이는데[52], 현재 논의되는 측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것이기에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또한 제한범위가 광범위해 금지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발제문 작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1월 4일 앞서 살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뉴스를 확인했다[53]. 현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제지하겠다는 목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① 앞서 지적한 쟁점들이 반영된 새로운 법안 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고, ② 무기 수출이 아닌 지원의 경우를 통제할 수 있는 법안, 앞서 살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이 함께 당론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③ 국회 동의권과 함께 정보권 확보를 위한 입법도 병행되어야 한다.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법안들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전쟁의 시기, 평화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V. 마치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행하는 당사자에게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가 본 토론회의 주제다. 이 주제를 조금 일반화시켜 보면, 무기 수출에 대한 제도적 정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은 보다 다양하다. 2024년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 달러(약 19조 원) 수준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이 되었다. 수출 국가 범위나 무기 체계 범위도 늘어나고 있다. 달라진 규모에 따른 통제와 감시 역시 증가해야 함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다. 또한 무기 수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보, 외교, 경제, 대외적 이미지 등의 영향 역시 달라진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규모 증가로 인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관련한 최근 몇 년간의 논쟁이 이를

[52] 위 법안 중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53] 한겨레, <민주 '우크라 무기지원' 제동…'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당론 채택>, 2024. 11. 4.

방증한다. 때문에 무기 수출은 더 이상 경제적 이익으로만 평가하고 다룰 수 없는 중층적 문제가 되었고 질적으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54].

따라서 무기 수출에 대한 입법부 나아가 시민사회의 상호 검증과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정보의 국회 보고와 일반 공개, ② 국회의 동의권을 통한 통제라는 방향성을 두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자 학살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두 가지 방향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넓은 동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54] 법률신문, <K-방산 수출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입법 현황과 시사점>, 2024. 9. 10.

토론1

토론문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세계 각국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해외 무기 구매와 방위산업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안보 자산과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우수한 무기를 수입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방위산업 선진국의 무기 수출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앞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통제 제도를 국제인도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며, 2019년~2023년 전 세계 무기 수출 물량의 2%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2019년~2023년 무기 수출국

(단위 :%)

순위	수출국	수출 물량 비중
1	미국	42
2	프랑스	11
3	러시아	11
4	중국	5.8
5	독일	5.6
6	이탈리아	4.3
7	영국	3.7
8	스페인	2.7
9	이스라엘	2.4
10	대한민국	2.0

출처: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3, SIPRI Fact Sheet, March 2024, p.2.

무기 수출 여부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통해 동맹관계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무기 수출 산업이 군축 및 무기 확산금지에 관한 국제적 의무 이행에 반하여 국가 간 무력 갈등을 촉발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수출된 무기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군수품과 기술 수출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엄정한 면허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의 발표에서는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무기 수출 정책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 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국회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다만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이스라엘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2024년 SIPRI[55]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비중은 69%, 독일이 30%, 이탈리아가 0.9%이며,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나머지 0.1%를 차지하고 있다. SIPRI는 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유독 러시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56].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법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의 위법성 심사를 하였다. 2024년 4월 30일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일의 무기 수출 중단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 2024년 4월 30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독일의 무기 판매량이 감소했고, 독일이 판매한 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7].

2024년 1월 31일 미국 법원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가처분명령을 하지 않았다[58].

국제사회와 국내의 법원이 무기 수출의 위법성 판단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기 수출 허가가 적법하게 발급하였는가는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구국가 또는 원고 측에서는 상대국 또는 정부가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예측할 수

---

[55]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1966년 스웨덴에 설립된 군축·평화 전문 연구기관으로, 중립적인 입장과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무기 거래 동향 보고서, 핵무기 현황 등 관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56] Zain Hussain, “How top arms exports have responded to the war in Gaza”, SIPRI Commentary, 2024.10.3., (최종 검색일: 2024.11.5.), https://www.sipri.org/commentary/topical-backgrounder/2024/how-top-arms-exporters-have-responded-war-gaza
[57] ICJ, Order, Alleged Breaches of Certain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respect of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Nicaragua v. Germany), 2024.4.30., (최종 검색일: 2024.11.5.), https://www.icj-cij.org/sites/default/files/case-related/193/193-20240430-ord-01-00-en.pdf
[58] 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 —Palestine v. Biden, No. 23-cv-05829-JSW (U.S. District Court, N.D.C.A., Jan. 31, 2024), 714 F.Supp.3d 1160 (2024).

있었음에도 무기 수출을 허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복잡한 정치·외교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판단의 영역에 있다. 국제인도법 위반이 유일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법원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위험에 대해 정부의 정보가 국제기구와 NGO의 조사 내용보다 더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제기구와 NGO에 비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다. 국제기구와 NGO는 과거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국내 안보, 지역 안정, 외교와 같은 종합적 맥락에서 미래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발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을 평가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기 수출 허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가 무기 수출 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였다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국내외 법원이 무기 수출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무기 수출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다수의 소가 제기되는 현재의 기조를 보건대, 한국이 변화된 위상에 맞는 무기 수출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무기 수출 정책은 아직 국내 안보, 경제적 이익 또는 수동적인 국제법 준수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무기 수출 정책에도 국제인도법 존중과 인권 보호와 같은 국제적 시야를 반영해야 한다. 국제법상의 의무를 사후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기 수출 허가가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수입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청은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 원칙에서 나오는 국가의 의무[59]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국가의 정책 기조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만약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가 비인도적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면 해당 무기에 대한 허가는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의 안보, 대외관계와 같은 정치적 이해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인권, 국제인도법에도 부합하는 무기 수출 허가 제도를 정립하고, 투명하면서도 책임 있는 무기 수출 허가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60]. 외교부는 허가 대상 수출이 대한민국의 국제법상 의무 이행과 제재 준수 위반을 초래하는지, 수출된 품목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사용되는지, 그리고 수출을 통해 부적절한 이용자 또는 부적절한 최종 사용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수출이 우리 국군 및 동맹국에 대항하여 사용될 위험과 대한민국 또는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우려되는 최종 사용자에게 물품이 전용 또는 수출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기 수출 허가에 대한 심사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사업법」과 「군수품관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은 국제인도법 존중의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 한국의 무기 수출 허가 기준은 평화 목적, 국제평화, 안전 유지 등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59]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헌법이념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0] Lea Köhne & Vincent Widdig, "A quest for transparency in arms exports: The Berlin administrative court's stance on exports of arms to Israel", EJIL: Talk!, 2024, (최종 검색일: 2024.11.5.), https://www.ejiltalk.org/a-quest-for-transparency-in-arms-exports-the-berlin-administrative-courts-stance-on-exports-of-arms-to-israel/

도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개방적 규범 구조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정부가 국내의 경제·정치적 이익만 고려하여 인권 보호와 같은 국제사회의 가치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은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는 오직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운반, 거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제26조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무기통제법」(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Gesetz über die Kontrolle von Kriegswaffen])」이 있다. 동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는 "무기 수출 승인이 독일연방공화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위태롭게 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 허가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위법성 판단을 넘어 정책의 실체적 판단을 대체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기 수출 허가 현황을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투명성이 강화되면 정부의 무기 수출 허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토론2

집단학살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의 역할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지난 9월, 팔레스타인 저널리스트 비산 오우다(Bisan Owda)와 알자지라의 AJ+의 다큐멘터리 “It’s Bisan From Gaza-and I’m still Alive”가 에미상 다큐멘터리 단편 부문에서 수상했다. 구독자 226만 명에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그녀의 채널에 “It’s Bisan From Gaza, Look At What U.S. Weapons Have Done(가자지구에서 비산, 미국의 무기가 벌인 (파괴)를 보아라)” 제목의 영상이 지난 5월 21일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미국’산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포탄 파편과 불발탄이 가자지구 중부 칸유니스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주변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기습공격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한 군사 공격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지난 10월 2일 한국리서치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년, 한국인들의 생각은?> 여론조사 결과[61]에 따르면 전쟁 발발의 책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이 조금 우세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듯 ‘이스라엘도 나쁘지만, 하마스도 나쁘다’라는 양비론에 대해 발제문들은 이스라엘에 의한 군사 공격이 만든 재앙적 현지 상황과 인명피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과 의견,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발제문들은 한국과 같이 그동안 정치·외교적으로 친미, 친이스라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무기의 종류와 규모, 비용을 제시하며 집단학살의 개입 정도를 수치화하고, 일부 국가에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결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중단한 사례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입법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명료하게 담고 있다. 하지만 임재성의 발제문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에서 언급되었다시피,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 목록과

[61]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99-3호), 여론속의 여與 론論 기획: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년, 한국인들의 생각은?, 2024.10.02

업체명, 총액 등은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사유로 '외교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익 침해 우려와 국방에 미칠 불이익' 때문이라고 열거한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비공개 따른 국익=국제사회의 원칙을 역행하는 국익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내역 비공개에 따른 '국익'을 본질적으로 '국익'이라 칭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한국 시민사회는 올해 1월부터 그동안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이 있음을 확인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얼마나 수출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정보공개 신청 및 무기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보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현행법과 규정에 비춰 해당 무기 수출 관련 국내적 불법성은 없는지, 만약 현행 국내법과 규정에는 부합한다면 신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영아의 발제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 인권 기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전쟁범죄이자 집단학살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19일, 이스라엘의 반세기가 넘게 이어진 팔레스타인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점령 중단 및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완전한 배상을 명령[62]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종전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며,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가담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지금, 한국 산 무기가 이스라엘에 수출되고 있으나 그 실체 파악을 가로막으면서 '국익'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외에 의구심만을 증폭시키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변명에 불과하다.

국내외에 퍼지고 있는 이스라엘 BDS운동

이영아 발제문에서 언급된 영국과 프랑스의 무기 수출 중단 사례는 팔레스타인 현지와 국제 시민사회에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집단학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해당국가에서의 여론이 크게 작용했음이 분명하고, 비단 두 국가뿐만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학살과 점령에 대한 저항은 날로 커지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자지구에서의 학살, 주변국 시리아, 레바논, 이란으로까지 확전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과 반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BDS(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캠페인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아랍국가에서는 이스라엘 연관 기업과 제품에 불매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과 정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BTS의 팬클럽인 아미는 이스라엘을 공개 지지한 하이브 아메리카 CEO 스쿠터 브라운을 퇴출하라는 청원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서 10만 명이 넘게 서명[63]했다. 일부 팬은 하이브 본사 앞에 트럭 시위도 진행했다. 또한 지난 7월,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KBS가 주최하는 'K-POP 월드 페스티벌 예선이 이스라엘에서 개최하려고 하자 중동 지역의 K-POP 팬들을 중심으로 SNS 인스타그램과 X에

[62] "ICJ,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불법 판단…점령 즉각중단, 배상하라", 경향신문, 2024.7.21. 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407211525001 (2024.11.4. 접속)
[63] "하이브 아메리카 CEO 'K팝 퇴출 촉구'에 10만명 서명…왜?". 스포츠경향, 2024.6.8. https://news.nate.com/view/20240608n10697 (2024.11.4. 접속)

개최 반대 헤스테그 #KpopFestivalOutWithZionism #NoToArtwashingInKpop 캠페인[64]이 퍼지기도 했다.

국내 대학가에도 이스라엘과 학술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고려대 민주학생기념사업회 등 교내 단체들은 10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옹호해 온 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BDS 캠페인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제는 한국의 민간 기업과 정부 행사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력을 중단하려는 캠페인이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무관하지 않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처음 방문했던 20년 전과 현재의 한국의 위상을 비교하면 놀랄 만큼 차이가 크다. 20년 전 팔레스타인에 방문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의 꼭두각시 수준이고, 한국보다는 미국과 대치하는 북한을 더 선호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하면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는 너무도 유명하고 한국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다. 팔레스타인 활동가들도 한국은 자신들처럼 일제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지만(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점령은 식민 지배라 생각함)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뤘고 경제도 성공한 나라도 평가하고 있다. 주변국인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친이스라엘 행보를 할 때면 이들은 실망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앞서 비산의 영상에서 비산은 미국의 포탄을 지목하며 자신들을 학살하는 국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된다면 현지인들이 느낄 심정은 실망과 안타까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매일 가자지구의 학살 소식을 접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분노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산 무기가 집단학살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되면 이들은 한국을 어떠한 나라로 인식하게 될까.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국익'에 대한 고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중단과 불법 점령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영아 발제문은 서술하고 있다. 또한 임재성 발제문 결론에 따르면 "무기 수출은 더 이상 경제적 이익으로만 평가하고 다룰 수 없는 중층적 문제가 되었고, 질적으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했다. 두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과

[64] "K-Pop World Festival: Fans criticise Israel's participation", Middle East Eye, 8 July 2024, https://www.middleeasteye.net/live-blog/live-blog-update/k-pop-world-festival-fans-criticise-israels-participation (2024.11.4. 접속)

정부가 이스라엘 무기 수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한국이 집단학살에 가담한 국가로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국에 알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큰지는 모르겠다. 아랍국가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학살에 대한 분노가 계속 높아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는 차치하더라도 경제학자가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현재 한국 기업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과 관련 정보 비공개하는 정부 조치는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도 결국에는 무너졌다. 이미 가자지구에서의 사망자는 21세기(2000년~2023년 6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가자지구의 총사망자 수를 넘어섰고, 이 끝 모를 학살은 21세기 최악의 집단학살이자 전쟁범죄로 기록될 것이다. 반드시 끝나야 할 집단학살에 한국의 정부, 국회, 시민사회는 어떤 입장으로 개입할지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는 지켜보고 있다.

토론3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한 정부의 국제법상 의무와 기업의 책임

강지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서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 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제6조 제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본 토론문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이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와 책임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 특히 특정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국제적 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기 제조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2. 대한민국의 국제법상 의무

1) 조약법상 의무 : 무기거래조약

조약이란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 합의'[65]로 조약은 이를 비준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66].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은 국가 간 재래식 무기 거래를 규율하는 다자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조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6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6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비준하여 2017년 2월 국내 발효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9회 무기거래조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작년도 2023년 진행된 조약 실무그룹 회의와 당사국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두 발제자께서도 짚어주셨듯이 무기거래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당사국은 조약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나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탄약, 부품 등(이하 '무기류')이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인 또는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 기타 전쟁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의 운송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무기류의 운송이 당사국의 '관련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다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67]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가 이러한 국제적 의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무기류를 수출한다면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지'할 수 있었다. 작년 10월 7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시작된 직후 유엔인권최고사무소 대표 등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상 공습과 봉쇄 작전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라고 지적했고[68] 올해 1월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plausible)며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69] 따라서 대한민국이 작년 10월 7일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최소 18억 원어치 무기 수출을 허가한 것은 무기거래조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설사 무기거래조약 제6조 따라 수출이 금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7조에 따라 수출국은 해당 무기류가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는지, 또는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등의 중대한 위반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제1항), 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제2항),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이 지속된다면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제3항). 무기거래조약 제6조의 금지 규정과 제7조의 수출입 평가 규정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8조 제6항과 제22조 제4항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허가했다는 것은 무기거래조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국가 수출통제 제도'(제5조 제5항)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으로서의 국제법적 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약의 내용을 국내 법체계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2) 국제법상 강행규범과 국가 책임

조약 외의 국제법의 대표적인 법원(**法源**)은 국제관습법(또는 관습국제법)으로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이를 뜻한다. 국제관습법이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

[67] 소위 제노사이드 협약. 국내 1951. 1. 12. 발효

[68] Reuters, UN rights chief condemns Israeli 'siege' of Gaza, militants' taking of hostages, https://www.reuters.com/world/israeli-air-strikes-hit-residences-schools-across-gaza-un-rights-chief-2023-10-10/

[69] 국제형사재판소, Order of 26 January 2024,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IN THE GAZA STRIP (SOUTH AFRICA v. ISRAEL), https://www.icj-cij.org/node/203447/

각국의 일반적 관행을 통해 확인되는 국제 규범으로 별도의 조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집요한 불복 국가' 등 일부 예외 존재).

이러한 국제관습법의 일종인 '강행규범(jus cogens)'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규범 중 그 특성상 국제사회의 근본적 가치를 반영하고 보호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탈(derogation)이 허용되지 않는 최상위 규범이다[70]. 강행규범은 국제법의 위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한다. 성문법인 조약도 강행규범과 충돌하면 무효이다[71]. 구체적으로 어떤 규범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지 여러 논의가 있지만,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열거하는 다음 규범은 강행규범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침략전쟁 금지, 집단학살 금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전쟁범죄 금지, 아파르트헤이트 금지,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자결권[72].

특정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state responsibility)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 중지, 배·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73]. 그러나 강행규범의 경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erga omnes) 의무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이를 위반하는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초안(ARSIWA)'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을 종식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74] 어느 국가도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75]. 국제법위원회는 ARSIWA 제16조에 대한 주석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무기 또는 기타 군사 지원하는 것을 이러한 '도움이나 지원'의 예시로 들고 있다[76].

작년 10월 7일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거에 따른 자결권 침해, 아파르트헤이트 등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위반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 이후에는 발생한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고문 등으로 인해 첫 번째 발제자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러한 행위와 명백한 관련이 있는(clearly linked)[77] 무기류를 이스라엘에 수출해 온 여러 국가가 이를 금지하였거나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행규범은 국제사회의 최상위 규범이며 이의 중대한 위반을 돕거나 지원하는 행위 역시 국제적 위법행위이다[78].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가장

---

[70]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Draft conclusions on identification and legal consequences of peremptory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2022, conclusion 2-3
[7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
[72] 위의 문서, conclusion 23
[73]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것도 이러한 구제를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74]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제41조 제1항.
[75] 위의 문서, 제16조 및 제41조 제1항
[76] 유엔 국제법위원회,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2001, 제16조, 9번 주석
[77] 위 문서, 제16조, 5번 주석
[78]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제16조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 무기류 수출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79].

3.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허가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무기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 역시 자신의 영리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그 영향력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 등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UN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신규 다자조약이 성안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핵심 요소는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다. 인권실사란 기업이 자사, 자회사,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인권영향평가), 그 위험을 완화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각 중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고, 이 모든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사내 제도와 체계를 설립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80].

무기를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하는 물품이 악용될 경우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으므로 일반 기업보다 강화된 수준의 주의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기제조기업이 이스라엘에 무기류를 수출할 경우 해당 품목이 인권 침해 등 부정적 인권 영향에 기여하거나 이에 연관될 수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완화할 수 없다면 국제 규범에 따라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현재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을 지적받는 국가에 무기류 수출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인권 실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우리나라 무기 제조기업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위한 실사 과정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난달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스라엘 대표 방산기업 엘빗 시스템즈와 '블랙호크' 헬기 성능개량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81]. 또한 우리나라 무기제조업체인 풍산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

[79] 이 외에도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제노사이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으로서의 역외 의무,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 등에 대한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
[80] 법무부,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2021 참고
[81] 한화, <한화시스템, KAI·엘빗과 전략적 협력 나서… 차세대 항전 시장 공략>, 2024. 7. 10, https://www.hanwha.co.kr/newsroom/media_center/news/news_view.do?seq=13740

분산탄(집속탄)을 생산하는 등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활동을 지속하여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 투자 제한 '블랙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82].

따라서 우리나라 무기 제조기업들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정부의 허가여부와 관계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류 수출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정부 역시 무분별하게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제조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보장하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4. 결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영향력은 그에 따른 책임을 수반한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은 국제법 위계상 최상위 규범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이를 무시한 채 근시안적인 상업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익'에도 큰 해가 될 것이다.

국제법상 의무 이행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협의의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다. 이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82] 파이낸스 뉴스, <풍산·LIG넥스트원, 글로벌 금융기관 블랙리스트 올라>, 2023. 11. 23, https://www.fn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19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 11. 06.
발행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아디, 참여연대
담 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이지원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